

# 벌꿀 규격기준 개정된다.

규격 현실화와 국제 기준과의 조화 위해

수분 현행 21.0% → 20.0%, 전화당 65.0 → 60.0%

벌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규격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.

식약청은 벌꿀의 주밀원 및 사양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Codex 등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벌꿀 규격을 개정키로 했다.

이에 식약청은 지난 6월2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를 통해 벌꿀 규격 중 수분을 현행 21.0% 이하에서 20.0% 이하로, 전화당 기준을

현행 65.0% 이상에서 60.0% 이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.

식약청은 이번 벌꿀의 규격 개정으로 벌꿀 규격의 현실화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통상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한편 식약청은 사양꿀의 정의와 사양꿀의 규격 신설, 탄소 동위원소비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. **양봉**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제1. 총 칙(생략)	제1. 총 칙(생략)
29-7 벌꿀	29-7 벌꿀
1) ~ 4) (생략)	1) ~ 4) (생략)
5)규격	5)규격
(1)수분(%): 21.0이하	(1)수분(%): 20.0이하
(2) ~ (3) (생략)	(2) ~ (3) (생략)
(4)전화당(%): 65.0 이상	(4)전화당(%): 60.0 이상
(5) ~ (9)(생략)	(5) ~ (9)(생략)